

우리 나라 海難審判의 概念과 性質

林 東 茲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in Korea

Im Dong Cheol

.....(目 次).....	
I. 序 言	5) 海難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評
II. 海難審判의 意義	III. 海難審判의 性質
1) 序	1) 行政上爭訟과 海難審判
2) 海員審判主義과 海難審判主義	2) 刑事訴訟 및 民事訴訟과 海難審判
3) 審判機關	IV. 結 論
4) 裁決의 內容	參 考 文 獻

Abstract

It is ten years since marine accidents inquiry system was introduced to our country. However on account of the speciality of this system only a few literatures and research works were available in this field.

Firstly, this paper introduced the concept and the definition of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nd discussed the basic two controversial theories for the system, the unique organization of the institute, the decisions at hearings, and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procedures of this system.

Secondly, in order to emphasize the characteristic nature of the marine accidents inquiry a comparison was presented for the differences between this procedure and other administrative suits;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The office of marine accidents inquiry in Korea is a par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Transportation. Therefore its decisions are administrative functions.

While its function is, to a certain extent, independent of the ordinary administration and its

proceedings are somewhat similar to the judicial litigation proceedings, the nature of its decision is quasi-judicial.

For a rapid development of marine industry and the peculiarities of the marine affairs,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Admiralty Court or a special division of the marine affairs in the Civil Court is highly desirable.

I. 序 言

先進海運國에 있어서도 1世紀 남짓한 歷史밖에 갖지 못한 海難審判制度가 우리나라에 實施되기는 1961. 12. 6 海難審判法(法律 第813號)의 公布에서 비롯된다.

이 法은 그 후 세차례의 改正을 보아 많은 面에서 制定當時보다 改善된 內容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는 그 間 船腹量과 入出港船舶의 激增 그리고 이에 따른 海難事故의 漸增이라는 海運界의 現實에 直面한 當局者들의 이 制度에 대한 關心의 增加라는 點에서 多幸스러운 일이지만 改正內容中에는 海難審判의 適正이라는 本來의 目的에 비추어 거리가 먼 退步的인 것이 있음도 看過할 수 없는 일이다.¹⁾

海難審判은 本來 그 審判의 性質, 內容, 審判機關의 構成, 組織, 一般 訴訟節次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面에서 獨特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筆者가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特殊한 성질을 가진 海難審判의 概念을 明白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即 實質的으로는 裁判의 一種이면서 行政機關의 機能으로 되어 있는 海難審判의 本質, 審判의 內容, 審判機關의 構成 등을 살피으로써 海難審判의 意義를 明白히 하고 더 나아가 이를 다른 爭訟手段과 比較하여 그 性質을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海難調查의 문제, 海事補佐人, 其他 一般訴訟節次와 類似한 節次法上의 문제 등은 論外로 한다.

II. 海難審判의 意義

1) 序

海難審判制度는 民事, 刑事의 裁判처럼 古代로부터 各民族에 普遍的으로 存在하였던 것이 아니고 近世 機械文明의 發達에 따라 海洋國家에서 發達한 特殊한 裁判制度이다.

1) 例전대 最近에 改正된 審判官의 任命資格을 규정한 海難審判法 第9條2項 4호에는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3級以上의 國家公務員으로 交通行政에 5年以上 從事한者”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交通行政의 概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點이 있다. 특히 同條同項의 5호와의 관계로 보아 여기의 交通行政은 海運關係 行政事務에 限하지 아니함은明白한데 그렇다면 自動車行政 航空行政 觀光行政 심지어 鐵道行政에 從事한 者도 海難審判院의 審判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규정이 不當함은 구구한 說明을 要하지 않는다.

그 目的은 궁극적으로 海難原因의 探求에 의한 海難의豫防에 있으며 海難審判이란 一定한 國家機關이 具體의으로 發生한 海難의 原因을 裁判의 方法에 의하여 審理判斷하는 法律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各國의 法制에 있어 그 立場이 반드시 同一한 것은 아니다.

2) 海員審判主義와 海難審判主義

海難審判에 있어서 그目的은 어디까지나 海難의 防止에 있으며 이는 어떠한 法制에 있어서나 共通된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直接的인 審判의 客體를 基礎로 하여 分類할 때에는 이를 海員審判主義와 海難審判主義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海員審判主義

海員審判主義는 海難을 일으킨 사람의 行爲를 審判의 客體로 하는 法制를 말한다.

이는 一定한 者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發生한 海難에 限하여 審判의 價值를 인정하고 그以外의 사람 또는 外界의 힘에 의하여 發生한 海難은 法律의 規制對象에서 除外하는 立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 등의 故意 또는 過失을 責任原因으로 하고 이에 刑罰 또는 行政罰을 加하여 海難의 發生을豫防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趣旨는 刑法에 있어서와 같다.

이는 佛蘭西를 위시한 佛法系의 諸國에서 채택되고 있으므로 프랑스主義라고도 하는데 이 主義에 있어서도 海難에 관하여 責任 있는 者의 制裁形式에 있어서 佛蘭西와 같이 特別刑法에 의한 刑罰에 의하는 方式과 日本에 있어서의 舊海員懲戒法과 같이 懲戒에 의한 行政罰의 形式을 취하는 方式이 있다.

2. 海難審判主義

이는 英國主義라고도 한다.

이 主義는 海難 그自體를 審判의 客體로 하는 法制로서 그發生原因이 사람의 行爲에 의하건 그렇지 않고 自然力 또는 外界의 事情에 의하건 不問하고 具體의인 海難이 어떠한 原因에 의하여 發生하였는가를 審理探究하여 同一한 原因에 의한 海難의 再發防止에 寄與코자 하는 立場이다.

그런데 이 主義를 취하는 法制에 있어서도 海難이 사람의 行爲 即 海技士 等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發生한 때에는 海難自體의 原因糾明과 더불어 그 行爲의 價值를 批判하고 이에 대하여 海技免許 등 資格의 박탈 其他 一定한 處分을 하는데 이것은 海員審判主義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海難審判主義와 海員審判主義는 단지 審判의 客體의 範圍를 달리 할 뿐 本質의인 差異가 없는듯한 外觀을 보이고 있으나 前者에 있어서는 사람의 行爲에 대한 審判이 반드시 包含되어야

2) 森清, 海難審判制度の研究, 東京, 中央大學出版部, 1968, p. 417.

할 必要한 要素가 아니므로 역시 兩主義 사이에는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3. 兩主義의 比較

海員審判主義와 海難審判主義는 本質的으로 審判의 客體를 달리 하므로 다음과 같은 重要한 差異가 있다.

① 海員審判主義에 있어서는 海難이 사람의 行爲에 의하여 發生하고 또한 行爲者가 存在하는 경우에 限하여 審判을 行하나 海難審判主義에 있어서는 海難이 사람의 行爲에 의하여 發生하였건 그렇지 아니하건 또한 그 사람이 現存하건 아니하건 不問하고 法에서 定한 海難이 있으면 항상 審判을 行할 수 있다.

따라서 海員審判主義에 있어서는 例컨대 船舶이沈沒하여 乘務員 全部가 死亡한 경우나 船舶의 行方이 不明한 경우에는 그 原因如何에 不拘하고 審判을 行할 수 없으나 海難審判主義에 있어서는 當然히 이러한 制限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海員審判主義에 있어서는 審判의 途中에 受審인이 死亡하거나 心神喪失의 狀態에 있을 때에는 刑事訴訟法에 있어서와 同一한 原理에 따라 審判請求를 棄却하거나 審判을 停止하여야하나³⁾ 海難審判主義에 있어서는 海難만에 관하여 審理를 계속할 수 있다.

③ 海員審判主義에 의한 審判權을 행사함에는 海難을 蒙起한 사람에게 法律의 效力이 미침을 要하지만 海難審判主義에 있어서는 이를 要하지 아니하고 단지 海難에 遭遇한 船舶에 法律의 效力이 미침으로써 足하다.

생각컨대 海員審判主義는 審判의 범위가 非常 狹少한 결함이 있다.

海難은 犯罪와 달라 항상 사람의 行爲에 의하여 發生하는 것은 아니고⁴⁾ 外界의 힘에 의하여 發生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實害도 甚大하므로 이를 除外하고서는 海難防止의 實效를 거둘 수 없다.

이에 反하여 海難審判主義는 모든 海難을 審理의 對象으로 하므로 그러한 결함이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海難審判主義가 海難審判制度의 本來의 目的에 비추어 妥當하다.

4. 우리나라 海難審判法의 立場

우리나라 海難審判法은 그 目的으로서 “이 法은 海難審判院의 審判으로써 海難의 原因을 紛明하고 海難發生의 防止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⁵⁾ 라고 明示하고 나아가서 “審判院은 海難의 原因에 관하여 紛明을 하고 裁決로써 그 結果를 明白하게 하여야한다.”⁶⁾ 라고 規定하므로써 海難을 蒙起한 사람의 責任條件에 구애됨이 없이 海難自體의 原因紛明을 基本原則으로 하여 海

3) 刑事訴訟法, 第306條 및 328條.

4) 犯罪로서 刑法의 評價의 對象이 되자마는 그것은 具體的인 人間의 行爲라야 한다.

黃山德, 刑法總論, 書局, 法文社, 1968, pp. 44, 157. 參照.

5) 海難審判法(以下 海審法으로 略稱), 第1條.

6) 海審法(第5條1項).

難審判主義의 立場을 指向하고 있다.

한편 同法은 海難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懲戒하도록 하였고 必要할 때에는 懲戒責任者 以外의 者로써 海難原因에 關係있는 者에 대하여는 勸告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이는 前述한 바와 같아 海難審判主義와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⁷⁾

이와같은 法의 規定에 따라 審判院의 審判에 있어서도 受審人이나 指定海難關係人에 대한 懲戒나 勸告없이 단순히 海難의 原因糾明을 裁決主文으로한 裁決例를 볼 수 있는 바, 例컨대 총돌이 外國籍船舶側의 運航上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이라는 裁決例⁸⁾, 船舶火災原因이 海上에 부유된 強한 引火性 物質에 由來하였다는 裁決例⁹⁾, 艦船 및 適하화물의 손상이 예기치 아니한 强風과 荒波로 인한 것이라는 裁決例¹⁰⁾등이 그것이다.

3) 審判機關

1. 審判機關과 그 體系

海難審判은 一種의 裁判節次로서 特殊한 國家機關에 의하여 행하여짐은 立法例의 共通된 點이다.

勿論 理論上으로는 그 判斷機能을 國家 以外의 公共團體나 私人에게 委任하는 것도 可能하다. 하겠으나 海難審判을 裁判制度로 하는 以上 裁判의 理念인 公平을 期하기 위하여서는 國家機關이 管轄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 할 것이다.

어떠한 國家機關이 審判을 擔當하는가는 法制에 따라 差異가 있다.

即 行政機關일 경우도 있고 혹은 司法機關일 경우도 있으며 또 下級審을 行政機關으로 하고 上級審을 司法機關으로 하는 等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第1審과 第2審은 行政府인 交通部長官 所屬下에 있는 海難審判院의 管轄로하여 第1審을 地方海難審判院이 第2審을 中央海難審判院이 각각 管轄하고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大法院의 管轄로 하였다.¹¹⁾

이때에 大法院은 行政機關인 海難審判院의 審判을 前審으로 하고 있지마는 이前審과 大法院의 裁判과의 關係는 下級法院과 大法院과의 關係와 같은 審級의 秩序를 이루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¹²⁾ 그러나 海難審判院의 審判이 實質的 意味에 있어서는 法院審級秩序에 있어서의 下級審의 機能에 해당하는 役割을 하는 點은 이를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7) 2), 2 參照.

8) 汽船 우양호 제15진세이마루 총돌사건 (1972. 중해심1호).

9) 汽船 제1대양호 화재사건 1972. 중해심6호).

10) 汽船 삼광3호 부선 손상사건(1972, 중해심 10호).

11) 海審法, 第3條, 21條, 74條.

12) 森 清, 前揭書, p. 429.

2. 審判機關의 組織

審判機關의 組織에 관하여는 審判官의 任用資格, 參審員, 審判部의 構成, 審判權의 獨立 등에 관하여 考察할 必要가 있다.

① 審判官의 任用資格 및 參審員

海難審判에 있어서 審判의 客體는 첫째로 海難이다.

그런데 海難은 船舶의 運航에 관련된 事故로써 그 內容도 複雜하며 技術的인 것으로 運航 即 航海 操船이나 船舶機關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이 있는 사람이라야 事故原因의 紛明도 이를 正確히 할 수 있음은勿論이다.

그리나 한편으로 審判은 一種의 裁判節次로서 一般訴訟節次와 類似하며 더욱이 海難이 사람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發生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制裁로써 懲戒罰(法制에 따라서는 刑罰을)을 科하게 되는 面에서 본다면 海難審判은 國家가 具體的인 事件에 法을 適用 宣言하는 作用으로서 사람을 處罰하는 裁判節次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海難審判에 있어서는 海難原因의 紛明과 受審人 등의 人權의 尊重이라는 面이 다같이 重視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審判官의 任用資格도 당연히 이러한 海難審判의 特性을 考慮에 넣고서 定하여지는 것이 妥當하다.

法制의 差異에 따라 任用資格규정도 여러가지로 구구하지만 대체로陪席審判官 또는 參審員制 등의 活用으로 審判에 있어서 技術者와 法律家가 同時に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³⁾

우리나라 海難審判院의 審判官任用資格規定도 대체로 이러한 趣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¹⁴⁾ 全然 이러한 趣旨와는 동떨어진 條項도 있어¹⁵⁾ 자칫하면 海難審判院의 權威가 크게 떨어질 憂慮가 있다.¹⁶⁾ 參審員制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當初 이 法 制定當時에는 없었으나 그후 法改正에 의하여 導入 채택되었다.

대저 本來의 裁判官이 아닌 一般國民으로서 裁判에 참여하는 方途에는 陪審과 參審이 있으며 陪審員은 事實에 관한 裁判所의 質問에 答申하는 것을 職務로 하고 參審員은 本來의 裁判官과 同一한 資格으로 裁判에 參與하는 것을 職務로 한다. 海難의 審判에 있어서 諸國의 法制가 대부분 陪審 또는 參審의 制度를 두는 理由는 造船術 기타 船舶運航에 관련된 技術의 進步가 현저하므로 審判에 臨하는者로 하여금 항상 最新의 知識과 老練한 技能을 保有케 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審判法을 보면 各級審判院에 一定한 數의 參審員을 두고 그 職務에 必要한 學識 經驗이 있는 者 中에서 各級審判院長이 이를 委嘱하도록 하였으며 參審員은 海難의 原因紛明이 특히 困難한 事件의 審判에 參與하도록 하고 審判에 參與하는 參審員의 職務 및 權限은 審判官

13) 森 清, 前揭書, pp. 430~433.

14) 海審法, 第9條.

15) 海審法, 第9條2項 4호.

16) 註① 參照.

과 같다고 하는 内容의 參審員規定을 두어 審判의 適正을 위한 配慮를 하고 있다.¹⁷⁾

② 審判部의 構成

審判部의 構成에 있어서 大部分의 法制는 合議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순수한 單獨制 또는 合議制와 單獨制를 併用하는 立法例 등도 있다.¹⁸⁾

海難審判은 앞에서 살펴 바와 같이 法律問題와 技術問題가 包含되어 있으므로 原則的으로 多數의 法制와 같이 合議制가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合議制와 單獨制를 併用하고 있으나 合議制가 原則을 이루고 있다.

即 海難審判院은 審判官 3名으로 構成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행함이 原則이나 다만 輕微한 事件에 關하여는 1名의 審判官이 審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單獨制도 兼用하고 있다.

그리고 單獨審判官이 審判할 수 있는 輕微한 事件의 범위는 이 法施行令 第35條에서 구체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中央審判院은 審判院 5名 以上으로 構成되는 合議體에서 審判을 行한다.

그리고 各級審判院은 海難의 原因糾明이 特히 困難한 事件에 關하여 審判長이 指定하는 參審員 2名을 陪席시켜야 한다.¹⁹⁾

③ 審判權의 獨立問題

海難審判의 主體인 審判院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비록 行政機關이라 하더라도 審判機能은 一種의 裁判임으로 審判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는 審判官에게 法官과 같은 獨立된 地位를 保障하여 그 職務遂行에 있어서 다른 外部勢力의 干涉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할 必要가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또 身分保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⁰⁾

그런데 海難審判에 있어 審判官에 대하여는一般的으로 法制가 그 審判權의 獨立에 關하여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다.²¹⁾勿論 一般法官이 審判官인 法制에서는 이 問題는 特히 따로 考察할 必要도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審判職務의 獨立에 關하여 審判長과 審判官은 獨立하여 審判職務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身分保障에 關하여 審判院長과 審判官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 減俸, 其他 不利益處分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생각컨대 審判官의 身分保障은 그 任用資格과 分離하여 檢討하기는 어렵다. 即 任用資格規定이 合理的이고 妥當하여 適正公平한 審判을 할 수 있는 審判官이 審判院을 構成하고 있으면 그

17) 海審法, 第14條.

18) 森 清, 前揭書, p. 432.

19) 海審法, 第21條 및 104條.

20) 宪法, 第102條 및 104條 參照.

21) 森 清, 前揭書 p. 435.

22) 海審法, 第12條, 및 13條.

身分保障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身分保障만을 내세우는 것은 別意味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任用資格規定을合理化하여 海難審判의 性質上 審判官 不適格者의 任用을 排除하고 그 任期를 연장하여 身分保障을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裁決의 內容

海難이 發生하면 審判院의 調查官은 海難을 調査하고 이 事件을 審判에 붙여야 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地方審判院에 대하여 審判을 請求하여야 하며²³⁾ 따라서 地方審判院은 調査官의 審判開始의 請求에 의하여 審判을開始하게 된다.²⁴⁾

이와같이 開始된 節次에 있어서 一定한 事實에 관하여 法律을 적용하여 그 結論을 表示하는 審判院의 意思表示의 判斷이 審判이며 訴訟에 있어서 裁判과 같은 뜻이다.

審判은 그 性質에 따라 終局的 審判과 終局前의 審判으로 區分할 수 있고 또 終局的 審判은 이를 實體的 審判과 形式的 審判으로 區分될 수 있음은 一般裁判에 있어서와 같다.²⁵⁾ 또 審判院의 判斷에는 그形式으로 보아 裁決決定 등이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海難審判의 本質解明에 가장 긴요한 審判인 裁決의 內容만을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裁決中에서도 形式的 裁決보다 實體的 裁決의 더욱 意味가 있음은勿論이다.

1. 第1審의 裁決

地方審判院의 裁決은 다음과 같이 分類考査할 수 있다.

① 審判請求棄却의 裁決

이는 審判開始의 請求를 棄却하는 裁決로서 審判開始請求의 條件을 欠如한 경우 即 形式的 審判權이 없는 경우에 하는 裁決이며 法第52조에서 세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刑事訴訟法上 形式的 裁判인 公訴棄却의 判決을 하여야 할 경우의 一部內容과 그趣旨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²⁶⁾

② 海難의 原因을 明白히 하는 裁決, 이 裁決은 本法의 目的上 가장 重要한 裁決이다.

그 判斷의 表示는 裁決의 主文에서 하게 되며懲戒處分 또는 勸告를 隨伴하는 것이 普通이지만 受審人이나 指定海難關係人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海難原因糾明의 判斷만을 한다함은 앞에서 詳述한 바와 같다.

이 原因糾明의 裁決은 懲戒의 裁決이나 勸告의 裁決 등에 先行하는 判斷이며 다른 裁決이 由來하는 基礎가 된다.

23) 海審法, 第17條, 38條.

24) 海審法, 第40條.

25) 金箕斗, 新刑事訴訟法, 서울, 博英社, 1969, pp. 186~189.

26) 刑事訴訟法, 第327조 參照.

國家는 海難의 原因을 明白히 하고 또한 海難을 起起한 사람의 行爲 및 海難防止에 관한 現在의 制度와 施設의 價值를 檢討하고 批判할 必要가 있다.

法第4條에서 “審判院의 審判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에 관하여 海難의 原因을 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5個項을 列舉한 것은 이 때문이다.

問題는 여기에 列舉한 事項이 限定的 列舉로서 그 以外의 事項은 紛明對象에서 除外되느냐 하는 疑問이 있으나 이 法의 目的立法趣旨를 考慮할 때 이에 限定할 理由가 없다 하겠으므로 審判院은 海難의 原因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列舉事項에 구애되지 아니한다고 본다.²⁷⁾

③ 海難의 事實이 없다는 裁決

海難審判院이 審理한 결과 海難의 事實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事實, 證據, 理由 등을 明示함을 要하지 아니한다.²⁸⁾

④ 懲戒의 裁決 및 懲戒免除의 裁決 懲戒는 이 法 뿐이 아니라 다른 公法 및 私法中에도 存在하고 그 規定內容도 一定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公法上 特히 行政法上의 懲戒나 親族法上의 懲戒에 있어서는 懲戒權의 主體와 이에 服從하는 者와의 사이에는 倫理的인 關係가 있는 것이 그 特質이라고 할 수 있다.

海難審判院의 裁決은 國家行政權의 作用이라고 볼진대 懲戒權의 主體인 海難審判院과 被懲戒者인 受審人과의 관계는 이를 公權力關係라고 볼이 妥當할 것이므로 이 法에 있어서의 懲戒는 公法的인 面에서 考察하기로 한다.

公法上의 懲戒는 國家가 公法上 一定한 身分을 가진 者의 職務上의 義務를 履行시키기 위하여 그 義務違反者에 대하여 科하는 罰이다.

그리고 이러한 身分關係를 行政法에서는 特別權力關係로서 다루고 있다.

即 公法上 特別權力關係라 함은 一般權力關係에 대한 판념으로서 公法上의 特別한 法律原因에 의거하여 特定한 目的에 必要한 限度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包括的으로支配하고 다른쪽이 이에 服從할 것을 內容으로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種類로서 1)公法上의 勤務關係, 2)公法上의 營造物 利用關係, 3)公法上의 特別監督關係, 4)公社團關係를 드는 것이 通說이다.²⁹⁾

그리고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의 公權力의 내용으로서 그 主體에게 그 内部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질서문란者에게 懲戒罰을 科할 수 있는 權力を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懲戒罰은 一般統治權에 의거하여 行政法上의 義務위반자에게 科하는 制裁인 行政罰과 區別되며 또 反社會的인 法益侵害에 대하여 國家社會의 一般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科하는 制裁인 刑罰과 區別된다.

또 刑罰과는 그對象 目的 등을 달리하는 까닭에 同一한 行爲에 대하여 兩者를 併科할 수 있

27) 森 清, 前揭書, p. 256.

28) 海審法, 第54條 但書.

29) 金道昶, 全訂一般行政法論(上), 서울, 青雲社, 1973, pp. 171~181.

다.³⁰⁾

法第5條 2項은 “審判院은 海難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懲戒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海難審判院의 이러한 懲戒權根據와 그 法的 性質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관하여 海技免許나 導船士免許 등의 免許受有者와 國家와의 사이에 特別權力關係를 인정하는 見解가 있다.

即 “海技免狀이나 導船士免狀은 國家가 그 能力を 試驗制度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授與한 것이므로 그能力에 결합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處分할 수 있다. 即 免狀受有者와 國家와는 特別權力關係에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³¹⁾

그러나 免許所持者에 대하여 一定한 경우에 國家가 免許의 取消 등 一定한 不利益處分을 하는 것은 法治行政의 一般原則에 따라 認定되는 것이고 “懲戒”라는 法律用語를 使用하였다 하여 그 사이에 包括的 支配服從관계가 인정되는 公法上의 特別權力關係가 있다는 것은 妥當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國家公務員이 特別權力關係에 근거하여 國家의 懲戒權에 服從하는 것과 달라 이 法에 의한 懲戒權은 國家의 統治權의 作用으로서 發生하는 것이며 國家와 免許所持者와는 統治者와 被統治者와의 關係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³²⁾

海難審判院이 懲戒權을 行使함에는 1) 海難이 發生하였을 것, 2) 海難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 등의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發生하였을 것을 要하며 이의한 事實이 立證되면 法第6條의 범위내에서 懲戒의 裁決을 하게된다.

懲戒의 種類로서는 1) 免許의 取消, 2) 業務의 停止, 3) 謔責의 3種이 있고 그 適用은 行爲의 輕重에 따라서 審判院이 이를 定한다.

懲戒免除의 裁決은 本來 懲戒를 科할 경우이지만 法第6條3項의 一定한 事由가 있으면 審判院의 裁量에 의하여 懲戒를 免除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⑤ 勸告의 裁決

審判院은 必要할 때에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 以外의 者로서 海難의 原因에 關係있는 者에 대하여 法第5條 3項에 근거하여 勸告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元來 勸告는 勸告者가 被勸告者에 대하여 助言을 하고 또는 希望을 陳述하는 것으로 法律上拘束力이 發生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法의 勸告는 懲戒와 같이 審判院의 裁決의 一種으로 하고 있다.

法의 规定에 의하면 中央主任調查官은 勸告의 內容을 官報와 新聞에 公告하고 이를 交通部長官

30) 金道禪, 改訂一般行政法論(下), 서울, 青雲社, 1973, pp. 150~151.

31) 齊藤淨元, 海難審判法, 東京, 日本海事振興會, 1948, p. 52.

32) 森清, 前揭書, p. 264.

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勸告를 받은 者는 그 勸告를 尊重하여 그 취지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立法趣旨를 考慮한다면 비록 그 勸告內容 不履行時에 이에 대한 制裁 또는 強制의 方法이 없는 點에서 一般의 行政命令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로써 勸告를 法律上 아무런效果도 發生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³³⁾ 勸告의 裁決書 正本을 本人에게 送達함과 아울러 勸告의 内容을 公告하므로써 本人의 反省을 促求하고 一般의 輿論을 喚起하여 將來의改善을 要望하는 것이므로 그 實際的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고 본다.³⁴⁾

이 때에 이들 指定海難關係人이 받는 勸告의 苦痛은 懲戒에 뭇지 아니하며 一種의 名譽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海難의 原因에 關係있는 者라 함은 海難發生에 原因을 부여하여 이를 起起한 者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行爲에 의하여 將來의 海難防止가 期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려한 사람도 包含된다고 본다.

例컨대 海拔免許 없이 船舶의 運航에 從事하는 者, 船舶所有者 海難防止施設의 管理者, 造船者, 海事法令의 制定에 관계 있는 官廳 등이다.

2. 第2審의 裁決

裁決의 내용에 관한 實質上의 說明은 第1審의 裁決에서 이미 考察하였으며 또 第2審인 中央審判院의 審判에 관하여는 第1審의 規定이 많이 準用되고 있으므로 第2審의 裁決에 관하여는 이를 簡略하게 살린다.

① 第2審의 請求를 棄却하는 裁決

中央審判院은 第2審의 審判請求의 節次가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裁決로서 그 請求를 棄却한다. (法第 62條)

② 事件을 原審에 還送하는 裁決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法令에 위반하여 審判請求를 棄却하였을 때에는 裁決로써 事件을 地方審判院에 還送하여 야한다. (法 第63條)

③ 審判의 請求를 棄却하는 裁決

中央審判院은 地方審判院이 第52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審判의 請求를 棄却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法 第64條)

④ 本案의 裁決

中央審判院은 第62條 내지 第64條의 경우 以外에는 本案에 관하여 裁決을 하여야 한다. (法 第65條)

i) 第2審의 請求를 棄却하는 裁決

33) 森 清, 前揭書, p. 268.

34) 齊藤 浄元, 前揭書, pp. 59~60.

地方審判院의 裁決이 主文 事實의 인정 및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 第2審의 判斷과 一致할 때에는 第2審의 請求는 理由가 없으므로 이를 棄却해야 할 것이다. 事實의 認定에 있어서는 裁決의 主文 또는 法律의 適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以外에는 不一致의 點이 있어도 第2審의 請求는 理由가 없는 것으로 解釋한다.³⁵⁾

ii) 原裁決에 가름하는 裁決

原審의 裁決과 第2審의 裁決이 一致하지 아니하는 경우 即 第2審의 請求가 理由있을 때에는 中央審判院은 原裁決을 取消하고 本案에 관하여 다시 適合한 裁決을 하여야 한다.

5) 海難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

1. 意義 및 性質

海難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라함은 中央審判院의 裁決을 받은 者가 一般司法裁判所에 대하여 그 裁決의 取消를 求하는 訴訟行爲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그 訴의 管轄機關 審級의 回數 등에 따라 法制의 差異가 있는 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最高法院인 大法院의 專屬管轄로 하였다.³⁶⁾

이 訴訟에 있어서原告의 目的是 原裁決의 取消에 의하여 中央審判院의 裁決을 裁決確定前의 狀態로 還元하고 다시 審判하여 自己에게 有利한 裁決을 求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結果는 原裁決의 取消가 있으면 이에 따르는 法律上의 效果로서 當然히 發生하는 것임으로 訴에 있어서 要求함을 要하지 않고原告는 다만 原裁決의 取消를 求하면 된다고 본다.³⁷⁾

地方審判院의 裁決에 대하여는 訴를 提起할 수 없다.³⁸⁾

그런데 이 訴는 海難審判院의 審判과는 다른 別個의 訴訟임은 兩者가 審判의 客體를 달리하고 審判節次의 體系를 달리하는 점으로 보아 쉽게 알 수 있다.

어떠한 內容의 裁決에 대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는가는 法에 明示되어 있지 아니하나 裁決은 海難에 대한 行政機關인 審判院의 處分이므로 違法이 있으면 訴를 提起할 수 있다고 본다.

不懲戒의 裁決에 대하여는 疑問이 있을 수 있지만 이 法의 裁決에는 受審人에 대한 處分以外에 반드시 海難原因에 대한 紛明이 수반되므로 原因에 대한 紛明處分이 違法인限 不懲戒의 處分을 받은 者라 하더라도 訴를 提起할 수 있을 것이며 特히 懲戒의 免除를 받은 者는 이것을 함으로써 큰 實利가 있다 할 것이다.³⁹⁾

2. 當事者

이 訴訟의 當事者에 관하여 法은 中央審判院長을 被告로 한다고 規定하였을 뿐原告의 當事者 通格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5) 森 清, 前揭書, p. 392.

36) 海審法, 第74條 1項.

37) 李院錫, 海難審判法研究, 法學博士學位論文, 서울, 檀國大學校, 1968. p. 143.

38) 海審法, 第74條 4項.

39) 森 清, 前揭書, p. 397.

그러나 中央審判院에 있어서의 當該事件의 當事者는 모두 適格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原告適格者로서는 當事者인 調查官 受審人 指定海難關係人을 들 수 있다. 調查官은 違法處分을 받은 者라고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一旦 疑問이 있을 수 있으나 調查官은 制度上 受審人 및 指定海難關係人과 對立하여 스스로 審判의 開始를 請求하여 第2審의 請求를 하고 또 公益의 代表者로서 그릇된 裁決을 是正하여야 할 職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受審人 또는 指定海難關係人이 없는 경우에는 調查官 以外에는 違法의 裁決을 取消請求할 수 있는 者가 없으므로 調查官은 適法한 裁決을 받음에 正當한 利益을 가지고 있으며 裁決取消의 訴權을 가진다고 본다.

이는 刑事訴訟에 있어서 檢事が 公益의 代表者로서 公訴權을 獨占行使하여 犯人을 訴追할 뿐만 아니라 法院에 대하여 法令의 正當한 適用을 請求하는 地位에 있음과 比較된다.⁴⁰⁾

受審人이 原告로서의 適格을 가지는 것은勿論이지만 指定海難關係人도 第2審의 當事者이므로 嘆告處分을 받은 경우는勿論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裁決이 違法이면 不懲戒의 受審人과 同一한 理由에 의하여 取消訴權을 가진다고 본다.⁴¹⁾

3. 訴의 提起와 效力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大法院의 管轄에 專屬한다.⁴²⁾

이는 行政訴訟法 第4條의 例外로서 行政訴訟과의 관계가 문제되나 이는 뒤에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이 訴의 提起期間은 法定되어 있고 그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하였다.⁴³⁾

專屬管轄은 公益的 要求 때문에 그 管轄을 一定한 法院에 專屬시켜서 특히 適正迅速한 裁判을 確保하기 위함것이며⁴⁴⁾ 또 提訴期間은 不變期間이므로 法院은 그 期間을 裁量에 의하여 伸縮할 수 없으며 그 徒過의 경우에 一定한 要件下에 追完이라는 救濟方法이 있다.⁴⁵⁾

이 訴의 提起는 裁決의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음을 明白히 하는 한便 大法院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裁決의 執行停止를 命하거나 그 命令을 取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⁴⁶⁾

4. 裁判

大法院의 裁判에 있어서는 一般訴訟의 경우와 같이 形式的裁判과 實體的裁判이 있고 또 訴가

40) 檢察廳法, 第5條.

41) 森 清, 前掲書, pp. 398~399.

42) 海審法, 第74條 1項.

43) 海審法, 第74條 3項.

44) 李英燮, 新民事訴訟法(上), 서울, 博英社, 1971, p. 49.

45) 李英燮, 新民事訴訟法(上), 서울, 博英社, 1971, p. 165.

民事訴訟法, 第160條.

46) 海審法, 第76條.

不適法하거나 適法하더라도 請求의 理由가 없을 때에는 각각 却下 또는 棄却의 裁判을 할 것이며⁴⁷⁾ 請求가 理由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判決로서 裁決을 取消하고 이를 中央審判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이 때에 還送을 받은 中央審判院은 다시 審判을 行하여야 한다. 다시 審判을 行한다는 것은 裁決確定 以前의 狀態로 回復한다는 것으로서 審判法의 一般規定에 따라 審理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에 大法院에서 裁決取消의 理由로 한 判斷은 그것이 事實上의 것이든 法律上의 것이든 中央審判院을 義束하게 되는 데⁴⁸⁾ 이는 訴를 인정한 立法趣旨로 보아 當然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III. 海難審判의 性質

앞에서는 海難審判의 概念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가지 内容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海難審判을 우리나라의 다른 爭訟과 比較하면서 그 位置와 性質을 살펴보자 한다.

(1) 行政上 爭訟과 海難審判

우리나라의 海難審判은 海難 그 自體를 審判의 客體로 하고 裁決로서 海難의 原因糾明을 目的으로 하는 한便 故意 또는 過失로 海難을 蒼起한 사람 기타 一定한 者에 대하여는懲戒 또는 告白를 행하는데 그 審判의 第1審과 第2審은 海難審判院의 管轄로 하고 第2審(中央審判院管轄)의 裁決에 대하여는 다시 大法院에 出訴하여 司法的 審查를 받도록 하였다. 海難審判과 行政上 爭訟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여기서는 便宜上 海難審判의 行政審判으로서의 性質과 海難審判과 行政訴訟과의 관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爭訟이라 함은 形式的 面에서 볼 때에는 國家作用으로서 行해지는 節次를 의미하고 절차의 實質的 内容을 반드시 問題로 하지는 아니하며 實質的 面에서는 紛爭의 有權的 判定을 의미하고 분쟁의 公正한 判定解決을 위하여 一定한 節次에 의할 것이 要請된다.

그러므로 爭訟이라 함은 法律關係의 形成 또는 存否에 관하여 當事者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國家機關이 有權의으로 이를 審理하고 判定하기 위한 일련의 節次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行政上 爭訟이라 함은 그 中에서 行政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爭訟을 말한다.⁴⁹⁾

1) 行政審判으로서의 性質

行政審判이라 함은 널리 行政機關이 행하는 行政爭訟의 節次를 말한다. 即 行政機關에 의한 審判을 말한다.

47) 行政訴訟法, 第14條.

48) 海審法, 第77條.

48) 海審法, 第77條.

49) 金道昶, 前揭書(上), p. 410.

우리 나라에서一般的으로行政審判은行政訴訟의前審으로서의地位를가진다.⁵⁰⁾

行政訴訟이正式爭訟으로서判定機關이獨立한裁判所의形式을취하고一定한訴訟節次를거침에 대하여行政審判은略式爭訟으로서그判定機關이나節次가不完全하다. 이러한行政審判의代表的例로서訴願,異議의申請등을들수있다. 그러면이와같은行政審判이인정되는理由는무엇인가?

이에관하여는첫째로權力分立과自律的行政統制의原則을든다.

即行政權이그過誤를自己反省에의하여司法權의간섭을받지아니하고自律的으로是正함이權力分立의原則에合當하다는것이다.

둘째로司法機能의補充을든다.

即오늘날行政이高度로複雜化함에따라마다한社會經濟上의難問題의解決은專門性技術性과迅速性이要請되는데반하여一般法官에게이러한行政各部門에관한專門的素養을期待할수없으므로行政審判은이러한司法機能의결함을補充한다는것이다.

그리면海難審判은이를行政審判으로볼것인가?

생각컨대海難審判院은앞서본바와같이行政機關의一種이므로審判院의審判은이를行政審判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海難審判은審判機關이나審判官이一般行政審判에비하여그獨立性專門性이比較的強化되어있고그審判節次에있어서도公開主義,必要的辯論,證據法則의채택등一般訴訟節次에高度로接近되어있으므로一般行政審判例컨대訴願등과는다른準司法的인特殊한性質의것으로一般行政爭訟의法理가그대로適用되지는아니한다.⁵¹⁾

그러나大法院의專屬管轄로되어있는中央審判院의裁決에대한訴는勿論正式訴訟節次이며따라서이에관하여는行政訴訟과관련하여다음에考察한다.

2. 行政訴訟과의 관계

行政訴訟이라함은行政法規의適用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當事者로부터의訴訟提起에의하여무엇이法인가를審理判斷하기위한訴訟節次를말한다.行政訴訟은行政上爭訟中가장完備한形態이지만各國에있어서의具體的인형태는크게나누어그裁判機關을一般司法裁判所로하고있는英美法系와그것을行政府所屬下의行政裁判所로하고있는大陸法系의두가지가있다.

우리나라憲法에서는司法國家主義를취하여특별한行政裁判所를두지아니하고行政事件도一般法院의管轄로하고있다.

그러나行政事件의特殊性을考慮하여異議申請,訴願등의行政審判을인정하고또行政訴

50) 行政訴訟法, 第2條.

51) 金道昶, 前揭書(上), pp. 410~418.

訟法에 의하여 行政訴訟에 관한 各種의 特例를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意味에서 순수한 英美式 司法國家主義는 아니다.⁵²⁾

우리나라의 行政訴訟法 第1條에 의하면 行政廳 또는 所屬機關의 違法에 대한 그 處分의取消 또는 變更에 관한 訴訟 其他 公法上의 權利關係에 관한 訴訟節次는 行政訴訟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海難審判과 行政訴訟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審判院의 裁決을 받은 사람이 이 裁決에 不服하여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關聯된다.

이에 관하여 海難審判法은 첫째로 第1審인 地方審判院의 裁決에 대하여는 訴를 提起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行政訴訟을 排除하고 있다.⁵³⁾ 그것은 海難審判院의 審判을 2審制로 하여 特殊한 審判節次를 마련한 이 法의 趣旨가 第1審의 裁決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第2審인 中央審判院의 審判을 받게 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하여는 一般法院에의 出訴를 인정하되 그 管轄은 大法院의 專屬管轄로 하였다.⁵⁴⁾

그런데 이 때에 中央審判院의 裁決은 海難事件에 관한 行政法規의 適用宣言으로서 그 內容은 國家와 이것을 받은 者와의 公法上의 法律關係이므로 이에 대한 不服의 訴는 性質上 行政訴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行政訴訟의 管轄은 그第1審을 被告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高等法院의 專屬管轄로 하고 高等法院의 裁判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경우에 大法院에 上訴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⁵⁵⁾ 반하여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이것을 高等法院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大法院의 專屬管轄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海難審判法 第8章에서는 4個條項에 걸쳐서 이 訴의 管轄, 提起期間, 被告, 訴의 提起와 効力, 裁判등에 관하여 詳細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法은 行政訴訟法에 대하여 特別法인 관계에 있다고 봄이 妥當할 것이므로 中央審判院裁決에 대하여는 行政訴訟이 當然히 排除된다고 해석된다.

셋째로 海難審判法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는 訴願法, 其他 法令에의한 訴願의 提起 또는 異議申請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이것은 海難審判法이 海難의 審判에 있어서는 行政機關인 審判院이 1審과 2審에 걸쳐 一種의 特殊한 行政審判에 해당하는 機能을 하게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같은 行政機關의 判斷인 訴願이나 異議申請을 다시 인정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52) 金道昶, 書揭書(上), pp. 411~412.

53) 海審法, 第74條 4項.

54) 海審法, 第74條 1項.

55) 行政訴訟法, 第4條.

56) 海審法, 第87條.

2) 刑事訴訟 및 民事訴訟과 海難審判

海難審判中에서도 審判院의 審判은 위에서 여러번 言及한 바와 같이 行政機關의 判斷이지만 그 審判節次에 있어서 訴訟節次와 類似할 뿐만 아니라 海難을 惹起한 사람에 대한 故意 過失의 인정 등 裁決의 內容도 一般 民刑事裁判에 있어서와 對比하여 보는 것이 海難審判의 性質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여기 간단히 考察키로 한다.

단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最高法院인 大法院의 管轄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는 앞서 行政訴訟과의 관계에서 考察하였으므로 除外한다.

1. 刑事訴訟과의 關係

海難을 惹起한者가 船舶을沈沒 또는 破壞하고 또는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따로 刑法上의 犯罪를 構成하게 된은 當然하다.

그리고 이러한 犯罪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에 의하여 搜查 訴追하게 되는데 刑事訴訟은 訴訟의 客體인 犯罪의 真相을 파악하여 刑罰法令의 適正迅速한 適用實現을 그 目的으로 한다.⁵⁷⁾ 同一한 事件에 關하여 海難審判節次와 刑事訴訟節次가 同時に 繫屬中일 때에 兩節次는 併行하게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한쪽의 節次를 先行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特別한 규정을 둔 法制도 있다.

制定當初의 우리 海難審判法도 “受審人の 當該事件이 刑事裁判에 繫屬中인 때에는 審判을 開始할 수 없다. 受審인이 刑事訴追를 받았을 때에는 그 事件에 대한 確定判決이 있을 때까지 審判을 中止하여야 한다.”⁵⁸⁾ 라고 하여 所謂 “刑事裁判先行의 原則”을 明文化하고 있었다.

이는 舊法이 制定當初에 日本의 舊朝鮮海員懲戒令의 關係條文을 그대로 簷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나 海難審判과 刑事裁判은 서로 그 目的을 달리하고 다같은 國家機關에 의한 國家意思의宣言이므로 서로 優劣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例컨대 刑事責任이 輕微하고 海難의 早速한 審判이 證據의 逸失을防止하고 海技士 등 免許所持者들의 懲戒여부를 速決하여 生活의 安定을 期한다는 面에서 본다면 海難審判을 先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現行法은 이러한 規定을 削除하였다.

그러나 다같은 國家意思의 實現이므로 그 과정에 있어서도 相互抵觸하는 것은 회피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機關의 節次가 終了할 때까지 審判을 中止할 것인가의 여부는 裁量에 맡기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아무튼 海難에 관련된 海技士 등의 船員은 行政上의 懲戒責任, 刑事責任 그리고 경우에 따라 民事責任까지 저야할 立場인바 이를 所謂 “船員의 3重苦”라 할 程度로 苦痛스

57) 金箕斗, 前揭書, p. 34.

58) 1961, 制定公布當時의 海審法, 第40條.

려운 것임에는 틀림없다.⁵⁹⁾ 또懲戒責任이나 刑事責任을 물기 위하여는 受審人 또는 刑事被告人の責任條件으로 다같이 故意 또는 過失의 인정이 必要하다.

그런데 이러한 關係者에 대한 故意 또는 過失의 인정에 있어서 같은 國定機關인 海難審判院과 1審 및 2審의 法院判斷이 서로 저촉될 수가 있지만 이는 결국 最高法院인 大法院에서 調整統一될 것이다.

2. 民事訴訟과의 관계

民事訴訟이라함은 私法上의 權利關係에 관한 紛爭을 判定하기 위한 訴訟節次이다. 即 國家機關이 民事法規의 具體的 實現을 目的으로 하여 對立하는 利害關係人을 參與시켜서 處理하는 法的節次라고 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行政法關係 即 公法關係의 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特殊한 行政審判의 一種인 海難審判과는 그 目的 適用法規 등에 差異가 있을 뿐 아니라 民事訴訟은 完全한 訴訟節次로서 司法權의 作用인데 대하여 海難審判은 行政權의 作用이라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그런데 이 때에도 海難을 原因으로 當事者間に 私法上의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 關係者에 대한 故意 또는 過失의 인정에 있어서 海難審判院과 1審 및 2審法院의 結論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亦是 大法院에 의하여 調整統一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外國에서와 같은 海事裁判管轄權(admiralty jurisdiction) 또는 admiralty or maritime jurisdiction)을 우리 나라의 法院組織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例컨대 英國에서는 Admiralty jurisdiction이 民事管轄權(civil jurisdiction)에 包含되고 있지만 民事事件中에서도 海事法規가 適用되는 事件은 High court 内의 Admiralty Division의 管轄에 속하는 法制 등이다.⁶¹⁾

우리 나라에서도 家庭法院의 特殊한 役割 등과 관련하여 볼 때 海事裁判所 내지 一般法院의 海事部創設의 문제가 진지하게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⁶²⁾

IV. 結論

海難審判의 理論에 있어서는 海難을 일으킨 사람의 行爲를 審判의 客體로 하는 海員審判主義와 海難 그 自體를 審判의 客體로 하는 海難審判主義가 있으나 海難은 사람의 行爲 뿐만 아니라 外界의 힘이나 自然力에 의하여도 蒼起되므로 海難事故의 原因을 紛明하여 海難의 未然防止를 目的으로 하는 海難審判制度의 趣旨에 비추어 海難審判主義가 妥當하다.

그러나 이 主義의 法制에서도 海技士 또는 導船士 등이 故意 또는 過失로 海難을 蒼起한 때에

59) 林東詰, “우리 나라의 海難審判制度에 관한 研究” 硕士學位論文, 서울大行政大學院, 1962. p. 24.

60) 李英燮, 前揭書, p. 18.

61) by R. M. Jackson, LL. D. The Machinery of Justice in England. Uniwersity Press. pp. 26, 55.

62) 李院錫, 前揭論文, p. 166.

는 이러한 사람을懲戒하는데 이것은 海難審判主義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海難審判制度는 大體로 海難審判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海難審判機關은 法制에 따라서 差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行政府인 交通部長官 所屬下에 海難審判院을 두어 審判의 第1審은 地方海難審判院의 管轄로 하고 第2審은 中央海難審判院의 管轄로 하였다.

그리고 第2審인 中央海難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最高法院인 大法院의 專屬管轄로 되어 있다.

海難審判은 技術的 判斷인 同時에 海難에 關聯된 一定한 者에 대한 懲戒處分도 포함되는 것 이 通例임으로 審判官의 任用資格要件이 特殊하지만 現行法上의 任用資格條項 中에는 不適當한 内容도 있다.

오늘날 날로 發展하는 科學技術을 海難審判業務에 導入應用 하기 위하여 審判에 당하는 者는 항상 最新의 知識과 老練한 技能을 保持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各級審判院에 參審員을 두는 制度를 채택하고 이 參審員은 海難의 原因糾明이 特히 困難한 事件의 審判에 參與하도록 하였다.

審判部의 構成에 있어서는 合議制와 單獨制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合議制를 原則으로 하고 다만 地方審判院에 있어서의 輕微한 事件에 限하여 單獨審判을 인정하고 있다.

審判權의 獨立에 있어서는 審判職務의 獨立에 관한 규정을 두고 審判官을 任期制로 하였으나 法官의 경우와 같은 強力한 身分保障은 받지 못하고 있다.

海難審判院에서 事件에 대한 審理가 終了하면 審判院의 意思를 決定하여 判斷을 表示하게 되는데 그러한 判斷을 審判이라 하며 이는 訴訟에 있어서 裁判과 같은 뜻이다.

이러한 審判에는 裁決, 決定 등이 있으나 裁決이 가장 重要하며 또 裁決은 形式的 實體的 見地에서 여의가지로 分類할 수 있지만 内容上으로 보아 海難의 原因을 明白히 하는 裁決 懲戒의 裁決勸告의 裁決이 가장 重要하다.

懲戒의 裁決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 등 免許狀所持者가 故意 또는 過失로 海難을 惹起하였을 때에 免許의 取消 등 一定한 不利益處分을 하는 處罰을 말하며 勸告라 함은 이러한 者以外의

는 이러한 사람을懲戒하는데 이것은 海難審判主義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海難審判制度는 大體로 海難審判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海難審判機關은 法制에 따라서 差異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行政府인 交通部長官 所屬下에 海難審判院을 두어 審判의 第1審은 地方海難審判院의 管轄로 하고 第2審은 中央海難審判院의 管轄로 하였다.

그리고 第2審인 中央海難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最高法院인 大法院의 專屬管轄로 되어 있다.

海難審判은 技術的 判斷인 同時에 海難에 關聯된 一定한 者에 대한 懲戒處分도 포함되는 것이 通例임으로 審判官의 任用資格要件이 特殊하지만 現行法上의 任用資格條項 中에는 不適當한 内容도 있다.

오늘날 날로 發展하는 科學技術을 海難審判業務에 導入應用 하기 위하여 審判에 당하는 者는 항상 最新의 知識과 老練한 技能을 保持할 必要가 있기 때문에 各級審判院에 參審員을 두는 制度를 製定하고 이 參審員은 海難의 原因糾明이 特히 困難한 事件의 審判에 參與하도록 하였다.

審判部의 構成에 있어서는 合議制와 單獨制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合議制를 原則으로 하고 다만 地方審判院에 있어서의 輕微한 事件에 限하여 單獨審判을 인정하고 있다.

審判權의 獨立에 있어서는 審判職務의 獨立에 관한 규정을 두고 審判官을 任期制로 하였으나 法官의 경우와 같은 強力한 身分保障은 받지 못하고 있다.

海難審判院에서 事件에 대한 審理가 終了하면 審判院의 意思를 決定하여 判斷을 表示하게 되는데 그러한 判斷을 審判이라 하며 이는 訴訟에 있어서 裁判과 같은 뜻이다.

이러한 審判에는 裁決, 決定 등이 있으나 裁決이 가장 重要하며 또 裁決은 形式的 實體的 見地에서 여리가지로 分類할 수 있지만 内容上으로 보아 海難의 原因을 明白히 하는 裁決 懲戒의 裁決勸告의 裁決이 가장 重要하다.

懲戒의 裁決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 등 免許狀所持者가 故意 또는 過失로 海難을 起起하였을 때에 免許의 取消 등 一定한 不利益處分을 하는 處罰을 말하며 勸告라 함은 이러한 者以外의 者로서 海難의 原因에 關係있는 者에 대하여 하는 裁決을 말한다.

中央海難審判院의 裁決에 대하여는 最高法院인 大法院의 司法的 審查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地方審判院의 裁決에 대하여는 直接 一般法院에 出訴할 수 없다. 海難審判에 있어서 1審, 2審인 審判院의 審判은 國家와 受審人 동과의 公法上의 權利關係에 關한 行政機關인 審判院의 判斷으로 一種의 行政審判으로서의 性質을 가지고 있으나 審判機關의 獨立性이 어느程度 인정되고 審判節次가 訴訟節次와 거의 同一한 點 등으로 보아 準司法的인 特殊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性質上 行政訴訟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1審을 行政訴訟과 같이 高等法院의 管轄로 하지 아니하고 直接 大法院의 專屬管轄로 하고 訴의 節次에 관하여 海難審判法에 特別한 규정이 있는 點 등으로 보아 海難審判에 있어서는 行政訴訟이 排除되는 것

으로 解釋된다.

中央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司法府인 大法院의 專屬管轄이므로 別問題가 없으나 海難審判院의 審判과 一般法院의 裁判과는 比較檢討할 必要가 있다. 海難審判과 刑事訴訟은 그 目的, 根據, 裁判機關이 서로 다르므로 同一한 海難에 관하여 海難審判과 刑事訴追가 可能함은勿論이다.

이 때 兩節次가 同時에 繫屬된 때의 節次進行의 先後에 관하여 舊法에서는 “刑事裁判 先行의 原則”이라하여 刑事節次를 優先시켰으나 現行法은 이와 같은 規定을 삭제하여 審判院의 裁量에 맡기었다.

民事訴訟은 私法上의 權利關係에 관한 紛爭을 判定하기 위한 訴訟節次이며 完全한 訴訟節次로서 司法權의 作用이므로 海難審判과는 根本의 差異가 있다.

刑責責任이나 民事責任을 추궁함에 있어 모두 關係者의 故意 또는 過失의 인정이 必要한 바 (勿論 民事責任中 無過失責任의 경우는 別문제이지만)

이 때 海難審判院과 1審 및 2審法院의 判斷이 저촉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最高法院인 大法院에서 調整統一될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海運業의 發達과 海事問題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海事裁判所 또는 一般法院의 海事部創設의 문제가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森 清, 海難審判制度の 研究, 東京, 中央大學出版部, 1968.
- 2) 齊藤淨元, 海難審判法, 東京, 日本海事振興會, 1948.
- 3) by R. M. Jackson, LL. D. The Machinery of Justice in England. 1960.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 4) 李院錫, “海難審判法 研究”, 法學博士學位論文, 檀國大學校, 1968.
- 5) 交通部 中央海難審判委員會, 海難審判裁決錄(上), 1972.
- 6) 金箕斗, 新刑事訴訟法, 서울, 博英社, 1969.
- 7) 金道昶, 行政法論(上. 下), 서울, 青雲社, 1973.
- 8) 李英燮, 新民事訴訟法(上), 서울, 博英社, 1971.
- 9) 別所成紀, 海事法規解說, 東京, 海文堂, 1968.